

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(제13조 단서 관련)

등 별	지 급 대 상	월 지 급 액
갑 중	가. 각 공장에서 항공기·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·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. 별표 9의 2. 방역·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. 해상시설물 설치, 철거,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.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·정비·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	50,000원 이하
을 중	가. 각 공장에서 항공기·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·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. 별표 9의 6. 각 부문의 병종란 중 가목,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.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군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.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. 중장비수송차량(K-915)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. 현장감식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. 해상시설물 설치, 철거,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.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	40,000원 이하

비고: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